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-112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(2008.04.03)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2009.02.26.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2-77(2012.06.01)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61(2013.05.30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2013-139(2013.12.12)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05(2014.6.24.)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3일
성 북 구 청 장

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290-9번지 일대(25,194㎡)
4. 사업시행자 :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재욱)
[강북구 번동 106-2 상아빌딩 301호]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7년 8월 3일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 - 가. 분양수입의 변경
 - 나.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
 - 다. 분양 대상자 변경, 오타수정 등에 따른 분양조합원의 종전 평가금액의 변경
 - 라. 권리자별 관리처분 내역 숫자 오류정정
 - 마. 비례율 변경

바. 공급계획의 변경

	공급 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									상가 면적(m ²)	상가 분양자	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(m ²)
		계	32	40	50	59A	59B	59C	84A	84B	84C	93	94	97			
공급 계획	계	513	40	37	15	48	77	25	102	144	22	1	1	1	2,264.86		
	토지등 소유자	84					32	13	16	22				1	941.57	7	
	보류시설	1				1											
	일반분양	336				47	45	12	86	122	22	1	1		1,323.29	-	
	임 대	92	40	37	15												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02-2241-283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